

2023년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0.(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김연희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6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80건(안건번호 제2023-15854호~1663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5854호~15865호(순번 1번~12번)은 웹하드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이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15866호~16633호(순번 13번~780번)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5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8쪽~11쪽은 저작권보호심

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3-76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26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웹소설 불법복제물

총 12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2번,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웹소설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웹하드에 올라온 웹소설이 권리자 아닌 자가 업로드한 것이 확인되어 심의 안전으로 상정되는 것인지? 만약에 저작권자가 업로드한다면 불법복제물과 구분이 가능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웹소설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별도로 있고 현재 웹하드에서는 정식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가 별도로 웹하드로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B 위원: 만약 권리자가 업로드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출판사와의 계약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임. 웹소설은 계약에 의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내용은 출판권과 비슷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2번은 삭제 및 전송 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 내지 78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1,25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번은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임. 2023. 1. 15.부터 3. 12.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의 8화 50분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로 제공중임.
 (드라마 '수리남'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2번은 드라마 '수리남'임. 2022. 9. 9.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제공된 한국 드라마로 6부작 전체 회차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로 제공중임.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9번은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임. 2023. 3. 15.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로 제공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13번부터 780번까지 총 1,250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부터 78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854호~16633호(순번 1번~780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17.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